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. 5. 9 선고 2024가단104862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이웅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2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 노유경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현직 약사로서 2022. 5.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소의 C(이하 'C' 이라고만 합니다)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신축건물에 독점 약국 개설 제안을 받고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함께 185,000,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. 그러나 원고의 기대와 달리 독점 약국 개설 업무는 성사되지 않았고 사실상 위 C의 사기행각임이 드러났습니다.
2. 그 후 원고는 위 C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C은 돈을 이미 사용하였다고 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2022. 10. 30.까지 3회로 나누어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2022. 8. 22.자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(갑제1호증 차용증 참조).
3. 그러나 C은 약속한 2022. 10. 30.까지 원고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. 이에 원고는 2022. 11. 5.자 지불각서(갑제2호증의 1)와 별도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(갑제2호증의 2)를 C으로부터 받아두면서 변제기한을 2022. 12. 20.까지 연기해 주었습니다.
4. 그러던 중 원고는 2022. 11. 26.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C이 작성해주기로 약속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변제기한을 2023. 1. 5.로 정했습니다(갑제3호증 공정증서 참조).
5. 그러나 C은 위 공정증서 작성시 약속한 변제기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이에 원고는 C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로 차용금 원금은 좀더 시간을 주기로 하는 대신 공정증서 작성시 약정한 대로 지연손해금으로 연 20%에 해당하는 월 3,000,000원D을 매

월 말일 지급받기로 하고 C의 처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‘연대보증인(피고)은 채무자(C)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’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도 이에 자필로 서명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(갑제4호증 합의서 및 연대보증서 참조).

6. 이와 같이 원고는 C에게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그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었으나, 이 자는커녕 원금도 단 한 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.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C이 무자력이므로 부득이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²⁾.

1) 원고, C, 피고 사이에 작성된 ‘합의서 및 연대보증서’ (갑제4호증)에서 지연손해금을 매월 300만원으로 정한 이율은 $[(185,000,000원 \times 0.2) \div 365] \times 30 = 3,041,095원$ 에서 만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것입니다.

2)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계산의 편의상 원고, C, 피고 사이에 ‘합의서 및 연대보증서’ (갑제4호증)가 작성된 2023. 1. 14. 이후 첫달인 2023. 2. 1.부터로 정했습니다.

